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 예고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(전세버스)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등 록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의 「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을 입법예고('23.09.15)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가. 입법 예고내용 :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

나. 의견제출기간 : '23.09.15 ~ 10.25 까지

다. 의견제출방법

1)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>)

2) 통합입법예고 -> (부처)입법예고 클릭

3) 공고번호 검색 : 2023 - 1139 검색 후 의견 제출

※조합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후 이용 가능합니다.

※ 붙 임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1부.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실 장 박호동 이사장
(전결)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3-184호 (2023.09.18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